

부동산취득세

귀하께서 오사카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

■ 납세자

부동산(토지나 가옥)을 매매, 증여, 건축 등으로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분이 납부합니다.

■ 납세액

$$\text{부동산 가격(과세표준액)} \times \text{세율} = \text{세액}$$

● 부동산 가격(과세표준액)

과세표준액이 되는 가격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의 시정촌 고정자산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가격입니다. 단 택지나 주택비준토지를 2024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는 고정자산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가격의 1/2 이 과세표준액이 됩니다.

● 세 율

다음 표의 세율이 적용됩니다.

취득일	종 류	토 지	가 옥	
			주 택	주 택 이 외
2008년 4월 1일~2024년 3월 31일		3%	3%	4%

■ 납부방법

납부방법은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

1. 부동산을 취득한 본인(귀하)께서 일본국외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직접 신고 및 납부를 하기 곤란한 경우

납세관리인을 지정하여 '납세관리인신고서 · 승인신청서'를 부세사무소에 제출해 주십시오.

납세관리인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분이 일본국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부동산취득세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대리인입니다.

신고에서 납부까지

부동산을 취득하고 일본국내에서 신고 및 납부 등이 곤란한 분은 동봉한 '납세관리인신고서 · 승인신청서'에 ①귀하의 주소 및 성명 등 ②납세관리인의 주소 및 성명 등을 기입, 날인(또는 서명)하여 부세사무소에 제출해 주십시오 (아울러 동봉한 부동산취득신고서를



©2014 大阪府もずちゃん

부세사무소는 납세통지서(납부서)를 납세관리인에게 송부합니다.

납세관리인은 송부된 납세통지서(납부서)로 납부기한까지 일본국내의 금융기관 등에서 납부해 주십시오.

2. 본인(귀하)께서 일본국내의 금융기관 등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는 경우

귀하께서 '부동산취득신고서'를 부세사무소에 제출해 주십시오.

후일 부세사무소에서 납세통지서(납부서)를 송부하므로 납부기한까지 일본국내의 금융기관 등에서 납부해 주십시오.(일본국내의 주소 또는 일본에 오시는 날 등을 부세사무소 담당자에게 알려 주십시오.)

■ 문의처

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부세사무소 담당에게 메일, FAX 또는 직접 방문하셔서 문의해 주십시오.(일본어 이외의 언어로 문의하시는 경우는 답변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)